

* 자료원: 2024 국가결핵관리지침 내 관련 내용을 발췌

일러두기 국가결핵관리사업 및 「결핵예방법」 이행에 따른 주요 FAQ를 정리한 것으로 잘 숙지하여 관할지역 결핵예방 관리 및 감독에 참고한다.

※ “결핵검진등”은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포함하는 개념(근거: 「결핵예방법」 제10조)

가. 검진 대상

- (1)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?
- (2) 검진 의무 기관·학교 등의 종사자·교직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?

나. 검진 주기, 방법

- (1) 결핵검진등 대상자의 검진 주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- (2) 매년 실시하는 결핵검진에서 '매년'의 기준은 무엇인가요?
- (3) “신규채용을 한 날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?
- (4) 신규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- (5)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경우 ‘다른 기관·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.’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?

다. 예외사항 등

- (1) 신규채용일 이전 결핵검진을 실시한 경우 “신규채용 시 검진”으로 같음이 되나요?
- (2) 다른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을 받고 해당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채용 또는 복직한 경우 신규채용 및 복직자에 대한 결핵검진으로 같음 된다면 매년 주기로 실시하는 결핵검진은 안해도 되나요?
- (3) 근무예정기간이 1개월 미만 신규채용자도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나요?
- (4) 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 대상자가 과거 치료력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다시 실시해야 하나요?
- (5) 휴직·과전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업무 종사일 이전 실시한 검진도 같음이 되나요? 같음이 된다면 인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- (6) 임신부인 경우에도 결핵검진을 흉부X선 검사로 실시해야 하나요?

라. 증빙, 보고, 점검

- (1) 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후 보고사항이 따로 있나요?
- (2) 결핵검진등을 실시했다는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?
- (3)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, 검진여부를 조회할 수 있나요?
- (4) 기관을 옮겨다닐 때마다 잠복결핵감염 검사확인서를 매번 제출해야 하나요?
- (5) 기관에서 “검진결과”를 제출하라고 하는데, 검진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?
- (6) 국가 또는 지자체사업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한 기관·학교의 장 등이 소속 종사자·교직원에 대한 검진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·교직원의 동의를 받아 일괄적으로 보건소 등을 통해 수검 여부를 조회 또는 회신 받을 수 있나요?
- (7)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종사자·교직원이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 양성인 이유로 기관·학교의 장이 불이익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

마. 과태료

- (1) 법 제34조의 과태료 부과 주체는 누구인가요?
- (2) 법 제34조에서 ‘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’,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요?
- (3) 기관 단위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?
- (4) 검진대상자가 매년 실시해야하는 검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- (5)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·학교의 장 등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·교직원이 검진을 거부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?
- (6) 과태료 부과 구체적 사항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은 '19.6.1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의료기관 등의 결핵검진등 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하는 건가요?
- (7) 법 제11조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주기(시기)와 점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- (8) 검진 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관·학교의 장 등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나요?
- (9) 1월말에 퇴직예정자인 경우에도 매년 하는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나요?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일까요?

바. 검진 및 치료

- (1)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각각 다른 검사인가요?
- (2)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정의, 진단방법,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?
- (3)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?

가. 검진 대상

Q 01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?

- A
-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·학교의 장은 종사자·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여야 함
 - －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
 - －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
 - －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- －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
 - －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
 - －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
Q 02 검진 의무 기관·학교 등의 종사자·교직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?

- A
-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에 따른 종사자·교직원의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, 종사자·교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검진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
 - － 고용의 형태(직접, 간접고용)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·학교 등의 장의 지휘·감독하에 해당 기관·학교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종사자·교직원으로 볼 수 있음
 - － 외부기관 파견 강사 등 기관·학교의 장 등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관·학교의 장 등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면, 기관·학교 등에서 종사하는 종사자·교직원에 해당되어 해당 기관·학교 장 등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
 - － 하지만 사회복지요원, 자원봉사자,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등과 같이 기관·학교 등과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「결핵예방법」 상 종사자·교직원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나, 해당 기관·학교 등의 종사자·교직원이 아니더라도 기관·학교 장 등이 결핵 감염 위험성 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를 권장하고 있음

나. 검진 주기, 방법

01 결핵검진등 대상자의 검진 주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검진	검진 주기 (「결핵예방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)	검진 방법 (「결핵예방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3항)
결핵검진	- 매년 실시할 것 -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함 - 휴직·과건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함	- 임상적,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- 가래(객담, 喀痰)의 결핵균 검사 -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 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
잠복 결핵감염 검진	- 기관·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(다른 기관·학교 등 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) 중 1회 실시하여야 함 -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('22.7.1일 이후 채용자) * '22.7.1일 이전 채용자는 '23.6.30일까지 검진을 실시해야 함 : 결핵 예방법 시행규칙 부칙(보건복지부령 제898호, '22.7.1.) - 다만,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「의료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,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「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,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하여야 함 *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「의료법」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67호('20.1.1. 시행))	- 면역학적 검사 - 다만,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잠복 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 할 수 있음

02 매년 실시하는 결핵검진에서 ‘매년’의 기준은 무엇인가요?

- 통상 매년이라고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를 의미함
- 다만,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진을 받은 시점에서 매년(1년 기준) 정기적으로 검진받기를 권장

03 “신규채용을 한 날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?

- 「결핵예방법」에서는 별도로 “채용일”을 정의하고 있지 않음
- 채용을 확정된 이후 실시한 신체검사 등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면,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가능
* 결핵검진의 경우, 채용검진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의 검사만 인정
- 단, 결핵검진등은 기관의 감염병관리를 위한 결핵예방조치 및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검진 결과가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

Q 04 신규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
- 기존에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종사 기간 중 1회(매년 검진 대상의 경우 매년) 실시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검진 실시·관리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거나 검진 목적(결핵 발생의 사전 예방)에 따라 검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
- 따라서 신규채용자는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조기(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)에 실시하여 적절한 결핵 예방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

Q 05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경우 '다른 기관·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.'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?

- 동 규정은 검진 의무 소속된 기관·학교 등이 변경되더라도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재직 중 1회만 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(같은 해에 결핵검진을 받고 다른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는 재검사할 필요가 없음)
 - 즉 소속기관·학교 등을 변경 시 마다 다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며, 동 기관·학교 간의 이동(A의료기관에서 B의료기관으로 소속을 변경) 뿐만 아니라 타 기관·학교 간의 이동(A의료기관에서 B산후조리원으로 소속을 변경)에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1회만 실시하면 됨
 - * 검진의무가 발생하는 기관·학교와의 이동을 인정함
- 다만,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하고, 휴직·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함(「결핵예방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)

다. 예외사항 등

Q 01 신규채용일 이전 결핵검진을 실시한 경우 “신규채용 시 검진”으로 갈음이 되나요?

- A
- 「결핵예방법」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규채용된 사람은 신규채용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함
 -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받았고, 해당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 「결핵예방법」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“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등”으로 갈음

Q 02 다른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을 받고 해당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채용 또는 복직한 경우 신규채용 및 복직자에 대한 결핵검진으로 갈음 된다면 매년 주기로 실시하는 결핵검진은 안해도 되나요?

- A
-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·복직된 경우 “신규채용 및 복직자에 대한 결핵검진”은 인정되나, 「결핵예방법」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결핵검진으로는 인정되지 않음
 - 예시로, 전년도 11월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였고 금년 3월 입사한 경우, 신규채용에 대한 최초 결핵검진등은 인정되나, 매년 실시하는 결핵검진은 인정되지 않음. 따라서 입사 이후부터 금년 12월 기간 내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함

Q 03 근무예정기간이 1개월 미만인 신규채용자도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나요?

- A
-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근무예정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하여 신규채용 시 결핵검진등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은 없음
 - 따라서, 「결핵예방법」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규채용된 사람은 근무예정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도 신규채용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함

Q 04 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 대상자가 과거 치료력 (결핵·잠복결핵감염)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다시 실시해야 하나요?

- A
-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면역학적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문진과 진찰로 갈음할 수 있음 (「결핵예방법」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2호). 다만, 이때에는 문진과 진찰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하며 지자체의 장이 증빙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함.
 - (참고) 「결핵 진료지침(5판, 2024)」: 잠복결핵감염 검사(TST, IGRA)는 과거에 이미 양성반응을 보였거나 과거 결핵 치료력이 분명한 환자에서 시행하지 않는다. 현재 검사방법으로는 과거에 잠복결핵감염 치료 혹은 활동성 결핵에 대한 치료를 시행한 경우 새로이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

Q 05 휴직·과건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업무 종사일 이전 실시한 검진도 같음인가요? 같음이 된다면 인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- A • 「결핵예방법」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휴직·과건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를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함
-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받았고, 해당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「결핵예방법」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“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한 결핵검진”으로 같음

Q 06 임신부인 경우에도 결핵검진을 흉부X선 검사 실시해야 하나요?

- A • 결핵검진은 「결핵예방법 시행규칙」 제4조(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) 제2항 제1호가~다목 (가. 임상적, 방사선학 또는 조직학적 검사, 나. 가래의 결핵균검사, 다.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) 중 어느 한 기준을 충족하여도 인정됨
- 임신부의 경우 흉부X선 검사는 적절한 납 차폐물 등을 이용하면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, 예외적인 여지가 있다면 현재 법령 적용의 기한범위(1~12월) 내에서 임신 전, 출산 후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음
- 흉부X선 검사 이외의 방법을 희망할 경우 가래(객담) 검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적절한 가래(객담)검사(검체의 적합성 등)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핵검진을 위하여 흉부X선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

라. 증빙, 보고, 점검 등

01 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후 보고사항이 따로 있나요?

- 「결핵예방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2에서는 기관·학교 장은 종사자·교직원의 결핵검진 등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·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 이 때,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된 바가 없으므로 기관·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작성·비치하시기 바람
- 이 외, 검진 실시 이후에 검진 보고 의무 규정은 현재 없음. 다만,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34조에 따라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

02 결핵검진등을 실시했다는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?

- 법 제11조에 따른 해당 기관·학교 등을 방문하여 종사자·교직원 명부와 검진 기록 등을 대조하여 점검할 시 지자체의 장이 증빙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
03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, 검진여부를 조회할 수 있나요?

- 국비지원 사업으로 보건소 등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만 검진결과를 등록관리하므로, 개별적으로 조회 가능한 방법은 없음
-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소속기간(다른 기관·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) 중 1회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속의 변경에 대비하여 개인이 검진확인서 등 증빙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관리하거나 검진을 받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기록을 발급받아야 함

04 기관을 옮겨다닐 때마다 잠복결핵감염 검사확인서를 매번 제출해야 하나요?

-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·학교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종사자·교직원에게 결핵·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기관을 옮길 경우, 기관장의 요구에 따라 개인의 결핵·잠복결핵감염 검진여부를 기관장에게 증빙하여야 함

Q 05 기관에서 “검진결과”를 제출하라고 하는데, 검진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?

- A
-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·학교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종사자·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, 개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검사결과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
 - 기관·학교의 장은 종사자·교직원의 검사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

Q 06 국가 또는 지자체사업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한 기관·학교의 장 등이 소속 종사자·교직원에 대한 검진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·교직원의 동의를 받아 일괄적으로 보건소 등을 통해 수검 여부를 조회 또는 회신 받을 수 있나요?

- A
- 「의료법」에 따른 정보 누설금지, 기록 열람 조건 등이 선결되어야 하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개인정보, 민감정보, 고유식별정보 등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 소지가 없도록 처리되어야 함
 - 단, 개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검사결과는 제공하지 않도록 함.

Q 07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종사자·교직원이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인 이유로 기관·학교의 장이 불이익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

- A
-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는 업무 종사 일시 제한, 취업 거부 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 하므로 (「결핵예방법」 제13조),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

마. 과태료

Q 01 법 제34조의 과태료 부과 주체는 누구인가요?

- 과태료 부과 주체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부과토록하고 있음(「결핵예방법」 제34조제2항)
 - 따라서, 학교의 경우라도 교육청이 아닌 특별자치시장 등이 부과해야 함

Q 02 법 제34조에서 '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',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요?

- 과태료 부과 대상은 종사자·교직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 제1항 각호에 나열된 기관·학교*의 장 등을 말함
 - *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,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,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,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

Q 03 기관 단위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?

-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자의 특정 시점에서 의무자가 의무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기관·학교 등의 단위로 부과함

Q 04 검진대상자가 매년 실시해야하는 검진(결핵검진, 잠복결핵감염검진*)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
* 결핵환자를 검진·치료·진단하는 의료인·의료기사·간호조무사

- 과태료 부과 주체의 위반 회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1차 위반 100만원, 2차 위반 150만원,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임(「결핵예방법 시행령」 별표)
- 예를 들어, 금년 2월 점검시 종사자·교직원 5명에 대해 결핵검진등 미 실시 사례를 적발하여 1차 위반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, 내년 2월에도 5건을 적발하였다면 2차 위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
 - * 점검 시 전체 종사자·교직원 100명중 미수검자가 1명 혹은 100명이어도 위반회차 1회에 해당됨

Q 05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·학교의 장 등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·교직원이 검진을 거부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- A
- 기관·학교의 장 등이 그 종사자·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하였으나 종사자·교직원이 검진을 미실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
 - 다만, 아래의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음(「결핵예방법 시행령」 별표)
 - 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②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③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 - ④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Q 06 과태료 부과에 구체적 사항을 정한 「결핵예방법 시행령」 개정안은 '19.6.1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의료기관 등의 결핵검진등 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하는 건가요?

- A
- 기관·학교의 장 등에게 부과된 결핵검진등의 의무는 '16.2.3 공포되고 '16.8.4부터 시행되어 적용 중인 규정이므로,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종사자·교직원에 해당되면 검진의무가 발생함(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 제1항)
 - 또한, 「결핵예방법」의 과태료 규정(제34조 “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”)은 '16.8.4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며, '19.6.12 부터 시행되는 조항은 과태료 부과권자 및 세부 기준을 정한 것임
 - 따라서, 의료기관 등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의 의무와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'16.8.4일부터 적용되고 있음

Q 07 법 제11조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주기(시기)와 점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- A
- 과태료 부과 주체가 결정할 사항이나, 결핵검진등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연 1회 점검할 수 있음
 - 이 경우, 검진 주기가 1년(1월~12월)이라 연중 검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시점에 점검할 것을 권장함(전년에 6월에 점검하였으면 올해도 6월에 점검)
 - 관내 점검 대상 기관·학교가 많은 경우 연간 점검 가능 기관·학교 수를 고려하여 점검계획을 수정한 후 순차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장함
 - 과태료 부과 주체가 사전에 점검 예정임을 고지하고, 해당 기관·학교 등을 방문하여 종사자·교직원 명부와 검진 기록 등을 대조하여 점검함
 - * 점검 시 종사자·교직원의 검진 여부만 확인하며, 검진결과에 대한 확인은 불필요

Q 08 검진 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관·학교의 장 등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나요?

- A
- 「결핵예방법」 상에는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다만, 의료기관평가인증, 어린이집평가 인증 기준 등과 같은 개별적인 기준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09 1월 말에 퇴직예정자인 경우에도 매년 하는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나요?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일까요?

- 근무예정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하여 매년 결핵검진 등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은 없음
- 따라서, 「결핵예방법」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 근무예정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도 1월 안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함
- 「결핵예방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라, 과태료의 부과 주체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자체가 판단 후 부과·징수

바. 검진 및 치료

01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은 각각 다른 검사인가요?

-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은 목적과 검사방법이 상이한 다른 검사로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제1항에 명시된 기관·학교의 종사자·교직원이라면 두 가지 검사를 각각 실시해야 함

구분	결핵검진	잠복결핵감염검진
검사목적	활동성 결핵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	결핵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
검사방법	임상적,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, 객담(喀痰)의 결핵균 검사	면역학적 검사 *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(IGRA검사),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(TST검사)

02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정의, 진단방법,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?

- 대표 자료 : ‘결핵은 무슨 병인가요’ 소책자 또는 의료인 등은 ‘결핵진료지침(5판)’ 활용
* 결핵ZERO 누리집(tbzero.kdca.go.kr)에서 확인 가능

03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?

- 잠복결핵감염의 치료는 “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”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목록은 “결핵ZERO 누리집 > 의료기관 검색 >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” 혹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